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18호 2021. 3. 18.(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6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1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393호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
- 사천시 공고 제395호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
- 사천시 공고 제397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6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3. 18.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 : 제2021 - 1호
2. 점용·사용 허가 연월일 : 2021년 3월 12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동력수상기구 접안용 관리사 및 휴게음식점
4. 점용·사용의 장소
 - 사천시 송포동 1344-1번지선
5. 점용·사용의 면적 : 986.4㎡(직접 : 504, 간접 : 482.4)
6. 점용·사용의 기간 : 2021년 3월 12일 ~ 2026년 12월 31일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문지연
 - 나. 주 소 : 사천시 상강청길 14, 104동 1004호 (용강동, 대경파미르)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사천시 공고 제2021-393호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사천~제주간 카페리(오션 비스타 제주호) 취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및 여객선 이용 승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매인 지정기준을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 추가
(안제4조제2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담배사업법」 제16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나.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058,

FAX: 831-6031)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통시설”을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생 략)</p> <p>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 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역 · 공항 · 버스터미널 · 선박 여객터미널 등 <u>교통시설</u></p> <p>2. ~ 6.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 <u>교통시설 및 기</u> <u>차 · 선박 등의 교통수단</u></p> <p>2. ~ 6.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관 련 법 규

□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7.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 바.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3.7, 2020.6.24] [[시행일 2020.7.1]]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7.3.7]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3.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7][본조신설 2009.7.1] [[시행일 2009.11.1.]]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395호

「사천시 사무위임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신설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있는 행정수행 기반을 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한 추가(안 별표 1)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3조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번호 : 055-831-2565, FAX : 055-831-6021)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을 “제104조에 따라 사천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의 사무중”을 “사천시의 사무 중”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시는”을 “사천시는”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2. (생략)</p> <p>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p>	<p>제1조(목적) ----- ----- 제104조에 따라 사천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 ----- ----- ----- -----.</p> <p>제2조(위임사항) 사천시의 사무 중 ----- 다음 각 호와 ----- -----.</p> <p style="padding-left: 20px;">1. 2. (현행과 같음)</p> <p>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 ----- 사천시는 ----- ----- ----- -----.</p>

[별표 1]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제2조 관련)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1	소속직원의 근무지정	「지방공무원법」 제6조	
2	소속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7조	
3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복명서 처리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6조,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4	소속직원의 당직명령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	
5	소속직원의 휴가, 사사여행 및 청원 신고 처리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제19조	
6	기록물 등록·분류·보관 등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7	적십자 회비납부용지 배부 및 모금 홍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9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10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11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12	매장, 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13	장애인 등록(취소) 및 등급조정 (재판정), 신청,접수,상담 및 장애진단의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의2	
14	장애상태 확인 및 장애등급 결과 통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15	장애인복지카드 교부(재교부) 및 반환,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16	장애인등록 현황의 기록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17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18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19	주민세(균등분) 자료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0	주민세(재산분) 자료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1	시세관련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자료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2	재산세(토지,건물,주택) 및 자동차세 등 과세자료 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3	시세의 납세고지서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교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4	시세 체납액 납부 독려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5	시세관련 납세 (과세, 미과세, 징수 유예)증명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26	<p>주민등록사무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 무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 위임한다</p> <p>1.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p> <p>2.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p>	<p>「주민등록법」 제2조</p> <p>「주민등록법」 제30조</p> <p>「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p>	
27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동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부터 제52조, 제77조제8항	
28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수리 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 제8조	
29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사항 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 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30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 위 반사항에 대한 조치(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31	<p>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전용신고(동 제외)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3. 농지이용실태조사 4.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관리 5.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6. 자경증명의 발급 	<p>「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p> <p>「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p> <p>「농지법」 제10조, 제49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p> <p>「농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제57조</p> <p>「농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p> <p>「농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p>	
32	<p>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다음의 권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p>「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p> <p>「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p>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1. 6. 1.]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1. 6. 1.]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397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할인대상 자매도시 주민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할인대상 자매도시 주민 요건 포괄적 규정 (안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3)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올바른 약칭 사용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85, FAX : 831-6024)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장 또는 수탁자·임차인(이하 “수탁자등”)”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 및 임차인(이하 “수탁자등”)”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탁자 등”을 “수탁자등”으로, “호”를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탁자 등”을 “수탁자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달하여 대기한 순으”를 각각 “도착하여 기다린 순서”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뜻하며”를 “말하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탁자 등”을 “수탁자등”으로,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탁자 등”을 “수탁자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호”를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이상의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 등”을 “수탁자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를 “해”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과도한”을 “지나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휴대한”을 “지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12세”를 “만 12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문란하게 하는”을 “어지럽히는”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수탁자 및 임차인”을 각각 “수탁자등”으로 한다.

제20조 중 “이내”를 “이내로”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탁자 및 임차인”을 “수탁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전대(轉貸)를 하는 경우 사천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탁자 및 임차인”을 “수탁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탁자 및 임차인”을 각각 “수탁자등”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탁자 및 임차인”을 각각 “수탁자등”으로 한다.

제24조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시”를 “사천시”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수탁자 등”을 “수탁자등”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9. (생략)</p> <p>제5조(운행시간)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케이블카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u>경우에 중단, 단축 또는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u></p> <p>1.·2. (생략)</p> <p>3. 그 밖에 <u>시장 또는 수탁자·임차인(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u></p> <p>제7조(임시휴장) 시장 또는 <u>수탁자 등</u>은 다음 각 <u>호</u>에 해당하는 경우 케이블카 운행의 임시휴장 일로 지정한다.</p> <p>1.·2. (생략)</p> <p>3. 그 밖에 케이블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u>시장 또는 수탁자 등</u>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p> <p>제9조(승차방법) ① 케이블카 왕</p>	<p>제2조(정의) ----- ----- <u>다음과</u> ----- -----.</p> <p>1. ~ 9. (현행과 같음)</p> <p>제5조(운행시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경우</u>-----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 및 임차인(이하 “수탁자 등”</u>----- -----</p> <p>제7조(임시휴장) ----- <u>수탁자 등</u>----- <u>호의 어느 하나</u>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u>수탁자 등</u>----- -----</p> <p>제9조(승차방법) ① -----</p>

복 탑승권을 가진 승객의 승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생략)

2. 경유지인 각산 및 초양정류장에서 승차는 승차장에 도달하여 대기한 순으로 한다.

② 케이블카 편도 탑승권을 가진 승객은 각산정류장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승차는 발권 후 승차장에 도달하여 대기한 순으로 한다.

제10조(이용료) ① ~ ④ (생략)

⑤ 대인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뜻하며 소인은 만 3세(3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11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제11조의2(무료탑승권) ① 시장 또는 수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탑승권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유료탑승객

-----.

1. (현행과 같음)

2. -----
----- 도
착하여 기다린 순서-----.

② -----

---- 도착하여 기다린 순서----

제10조(이용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말하며, -----

-----.

제11조(이용료의 면제)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무료탑승권) ① -----
--- 수탁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수의 1% 이내로 한다.

1.·2. (생략)

② 시장 또는 수탁자 등은 무료
탑승권 발급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하
며, 수탁자 등은 연 1회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할인) (생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에게 대해서 별표 3에 따
라 할인 이용료를 적용한다. 다
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9. (생략)

10.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11.·12. (생략)

② 시장 또는 수탁자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영목적의 효과
적 달성을 위해 연계시설 사용
자 등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
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이 이
를 적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

1.·2. (현행과 같음)

② ----- 수탁자 등-----

- 수탁자 등-----
-----.

제12조(이용료의 할인) (현행과
같음)

① ----- 호의 어느 하
나-----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이상인 사람

11.·12. (현행과 같음)

② ----- 수탁자 등-----

----- 수탁자 등-----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 3. (생략)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케이블카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운영을 중단한 경우<중전의 3호에서 이동 2020.10.5.>

② (생략)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 케이블카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제1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케이블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략)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

제13조(이용료의 반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천재지변,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 -----

-- 호의 어느 하나----- 해-----
-----.

1.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이용제한) -----

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지나친 -----

3. -----
----- 지닌 -----

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

5. (생략)

6. 케이블카시설 운영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7. (생략)

제19조(위탁 또는 임대 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문서로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 또는 임대기간 등) 케이블카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5년 이내 하며, 위탁의 방법과 계약 및 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

4. ----- 만 12세 -----

5. (현행과 같음)

6. ----- 어지럽히는 -----

7. (현행과 같음)

제19조(위탁 또는 임대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탁자등 -----

③ ----- 수탁자등 -----

제20조(위탁 또는 임대기간 등) ----- 이내로 -----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21조(재위탁 또는 전대(轉貸))
수탁자 및 임차인은 위탁(임대)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임대)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
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재위
탁 또는 전대(轉貸)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수탁자 및 임차인이
전대(轉貸)하는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무) 수탁자 및 임차인은
위탁 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수탁자 및 임차인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
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여
야 한다.
3. 수탁자 및 임차인은 새로운

-----.

제21조(재위탁 또는 전대(轉貸))

① 수탁자등-----

-----.

<단서 삭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전대(轉貸)를 하는 경우
사천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의무) 수탁자등-----

-----.

1. (현행과 같음)

2. 수탁자등-----

-----.

3. 수탁자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 및 임차인이 부담하고 위탁 및 임대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4. 수탁자 및 임차인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 또는 임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 및 임차인이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 및 임차인이 위탁 또는 임대 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 및 임차인에게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5. (생략)

제2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케이블카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 수탁자등 -----

-----.

4. 수탁자등-----

-----.

제23조(위탁 또는 임대의 취소) -
----- 호의 어느 하나 -----

-----.

1. 수탁자등-----

2. 수탁자등-----

3. 수탁자등-----

4. 5. (현행과 같음)

제24조(예산의 지원) -----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수입금의 관리) 케이블카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전
액 시 세입으로 납부한다. 다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 수납금은
다음날 금고업무 개시일에 납입
한다.

제26조(보험가입) ① (생략)

② 수탁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가입한 보험 외에 필요
하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
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 지원할 -----.
제25조(수입금의 관리) -----

-- 사천시 ----- . -----

제26조(보험가입) ① (현행과 같
음)
② 수탁자등-----

-- .

<삭 제>

사 천 시 공 보

제718호

[별표 3]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0,000원	-	1명 요금
	소인	7,000원	-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3,000원	-	1명 요금

- ※ 1. 이용료 할인은 일반캐빈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 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 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